

|| 목 차 ||

▲ 공 고

- 제2023-1037호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... 1
공청회 개최 공고

공 고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 - 1037호

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2023. 7. 28.

성 북 구 청 장

1. 공청회 개최 목적

-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설명, 토론 및 의견 수렴

2.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23. 8. 17.(목) 14:00
- 장 소 : 장위중앙교회(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01)

3.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안)의 개요

- 위치 및 구역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8-83번지 일대(84,248.0㎡)
- 사업유형 :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- 토지이용계획(안) : 획지 72,391.7㎡, 기반시설 등 11,856.3㎡
- 건축계획(안) : 용적률 300% 이하, 건축물 높이 120m 이하, 2,318세대(임대 807세대 포함)
※ 토지이용계획(안) 및 건축계획(안)은 변경될 수 있음

4. 공청회 발표자 신청에 관한 사항

- 신청 자격 : 장위9구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
- 신청 방법 : 신청서 양식에 따른 서면 신청(우편, 팩스, 이메일)
 - (우편)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8층
 - (팩스) 02)2241-6573 - (이메일) plulu1@sb.go.kr
 - 신청 서식 : 성북구 홈페이지「고시·공고」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
- 의견내용 : 금회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
- 신청기한 : 2023. 8. 14.(월)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- 발표자 선정 : 2인 선정 (※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주재자의 지명을 받아 의견 제시 가능)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(☎ 02-2241-27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청회 발표자 선정 신청서

신 청 자	성 명	(생년월일 :)
	주 소	
	연 락 처	
	권리물건	
	비고 (주요 경력 등)	
발 표 요 지		
신 청 자 주 의 사 항	① 공청회 발표자는 행정청(성북구청)에서 신청자 중 2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 ②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. ③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. ④ 발표자는 공청회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야 하며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,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, 퇴장명령 등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⑤ 발표자별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. ⑥ 기타 공청회와 관련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(☎ 02-2241-2782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	

2023. . .

성북구청장 귀하

